

안세회계법인 · 829-7575 세계재경저널 *AnSwer*

eAnSe.com • • • 2022/12/12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사업자들간에 거래대금의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방법

- 1. 전자세금계산서(매출) 발행 : 모든 법인과 + 2018년부터 개인(연매출 2억원 이상(23.7.1부터 1억))
- 2. 발행시점: 재화·용역이 공급(소유권이전, 장소이동 등) 되는 일자에 발행, 다음날까지 전송(거래 대금의 수금일자가 아니므로 거래즉시 발행하며, 연기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 있음)
- 3. 1개월간 거래 합계발행 : 당월분 거래 합하여 당월말일자 발행, 또는 매 1개월 단위 정기발행
- 4. 매입자를 위한 매입세액공제: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 10%를 거래징수함에 상응하여, 매입 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야 하므로, 쌍방간에는 합법적으로 거래하여 공제환급을 보장해 주어야 함.
- 5. 대부분 사업자의 매출, 매입: 매일, 매월, 매분기별로 사업자들의 매출, 매입은 꾸준하거나 일부 변동하므로, 언제나 분기별 매출 > 매입이므로, 분기별 납부세액(+)으로 계산됨이 일반적
- 6. 분기별 매입이 매출보다 커 부가세환급(-) 되는 경우 특히 주의(세무조사대상 될 수 있음): 특정 분기에 원·부재료 일시·과다매입, 특정기간 매출부진, 건물·기계설비투자가 종결된 경우 등의 사유 있으면 됨.
- 7. 거래공급시기: 재화인도일, 또는 상대방 이용 가능일,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 등은 조건 성취시, 장기 할부는 대가 각부분 받는 약정일, 완성도 기준은 진행율 확인하여 대가 각부분 받기로 한 날(가스·전기 등 계속적 공급은 정기검침일 등), 수출은 선적일 등
- 8. 미발행가산세 등 :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: 공급가×2%, 확정신고일까지 지연발급 : 공급가×1%(매입자는 지연수취 : 공급가×0.5%), 미전송 : 공급가×0.5%